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제4차 행정안전위원회
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지정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 포함〉

■ 이견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1629호)

2025. 9.

행 정 안 전 위 원 회
전 문 위 원 나 아 정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견태의원 등 11인
2. 제안연월일 : 2025. 7. 22.
3. 회부연월일 : 2025. 7. 2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.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,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,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,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.7% 수준으로 어린이(7.9%)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,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,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해당 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구역의 범위에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).

현행	개정안
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(생략)	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(이하 “보행환경개선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제1호</u> 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 대통령령----- ---제1호 및 제2호----- --.
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	1. ~ 3. (현행과 같음)
2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	
3. (생략)	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보행환경개선지구란 특별시장등이 지정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,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¹⁾으로서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의 보행환경개선사업²⁾의 시행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함.

[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(2024.12월 기준)]

구 분	지정 개소	평균 면적(km ²)
계	230	0.843327 (전국 평균)
서울	73	0.174836
부산	17	0.191975
대구	8	0.372875
인천	9	2.702094
광주	3	0.0003
대전	10	0.09543

1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
2.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
3.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
4.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

2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)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보행자길 신설,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
2.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
3. 차도와 보도의 분리, 고원식(高原式) 횡단보도(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)의 설치,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,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·보수 및 성능 개선
4.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
5. 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
6.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구 분	지정 개소	평균 면적(km ²)
계	230	0.843327 (전국 평균)
울산	4	0.19725
세종	2	1.15245
경기	18	0.10668
강원	5	0.371493
충북	11	0.288545
충남	2	3.118
전북	24	2.814245
전남	20	0.478611
경북	4	0.398
경남	11	0.132485
제주	9	0.206475

자료 : 행정안전부

현행법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³⁾을 해당 지구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, 지정 범위에서 노인

- 3)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 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 3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
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·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 5.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
및 장애인 보호구역⁴⁾은 제외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및 편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.

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, 최근 5년 간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교통사고건수를 비교할 때, 매년 노인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건수 대비 약 4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.

[어린이 및 노인 보행 교통사고건수 현황]

(단위 : 건)

구 분	어린이 보행 교통사고	노인 보행 교통사고
2020년	2,079	9,739
2021년	2,451	9,893
2022년	2,787	10,435
2023년	2,624	10,921
2024년	2,606	11,301
합 계	12,547	52,289

(자료 : 한국도로교통공단)

개정안은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,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

- 4)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1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2.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
- 3의2.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.

다만, 개정안과 같이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, 특별시장등이 지정할 수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16,308개소인 것에 대비하여, 노인 보호구역은 4,042개소, 장애인 보호구역은 164개소에 불과한데, 개정안과 같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더하여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, 위 3개 보호구역을 모두 포괄하는 범위에 한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가능해지므로 해당 지구의 지정을 전제로 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.

[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(2024.12월 기준)]

(단위 : 개소)

구 분	총 계	어린이	노인	장애인
계	20,514	16,308	4,042	164
서울	1,898	1,680	195	23
부산	916	826	84	6
대구	826	753	67	6
인천	914	644	263	7
광주	479	404	61	14
대전	617	457	153	7
울산	463	325	135	3
세종	143	134	9	0
경기	3,152	3,797	562	39
강원	1,246	752	212	4
충북	968.3	715	522	9
충남	1,246	1,048	873	8
전북	1,929	976	57	1
전남	1,034	1,035	124	4
경북	1,163	1,202	404	3
경남	1,609	1,223	181	4
제주	1,408	337	140	26

(자료 : 행정안전부)

다만, 개정안은 ‘이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’를 제외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, 현행 시행령 규정⁵⁾을 참고할 때 일정한

5)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법 제9

경우 예외 사유의 적용에 따라 탄력적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행정안전부는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행량이 많거나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곳 등 환경개선이 우선 필요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노인·장애인보호구역 포함을 의무화하는 경우,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가능한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349

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(이하 “해당 어린이 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(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)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
2.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